

●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447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,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6월 09일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. 개정이유

친환경차법 시행령 개정(' 21.5.4 공포)을 통해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(시행령 제18조의6 제7호 신설)하였고, 시행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개정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허용시간 (안 제6조 제2항)

- 완속충전기 완충시간(10시간내외), 주택內 주차시간*(14시간)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최대 14시간 주차 허용

* 퇴근이후 출근시까지(18:30~8:30) 주거지에 주차하는 생활패턴 고려

나. 단속제외 주택범위 (안 제6조 제3항)

- ▲ 단독주택, ▲ 연립·다세대주택, ▲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단속대상에서 제외

* 주차여건,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여부 등을 고려

3. 의견제출

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(참조 : 자동차과장, 주소 :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(전화: 044-203-4322, 전자우편: ajhaja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e.go.kr> →예산·법령→고시·공고→공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